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58
----------	-----------

제출일자	2007. 11. 1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2008. 1. 1.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만료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우리 군과 관련없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의2)
- 나.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6조의2)
 -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으로 함
 - 주택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함
- 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이관(안 제9조의2)
 - 「거창군세조례」 제32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를 이관함
 - 토지분 재산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확대함
- 라.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5조의2)
 - 전방조정자동차 : 승합차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에는 66/100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33/100을 경감함
 -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2008년에는 33/100을 경감하고, 2009년에는 16/100을 경감함
- 마.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안 제7조제6호)
 - 「과학관육성법」 ⇒ 「과학관육성법」 제6조(안 제7조제7호)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42조제1항
⇒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 제47조제1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 「거창군세조례」 제32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 「과학관육성법」 제6조
-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4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가) 기간 : 2007. 10. 17. ~ 11. 5.(20일간)
 - (나) 제출의견 :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제6호 중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며, 제7호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를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를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42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판·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5조의2 본문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5조의3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제 4호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④(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u>「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u></p>	<p><삭 제></p>
<p>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u>「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p>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u>「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u> 2. <u>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u>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u></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u>----- 각 호에서 정하는-----</u> <u>-----</u> <u>-----</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면제한 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략)</p> <p>6. 「<u>도서관 및 도서진흥법</u>」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p> <p>7. 「<u>과학관육성법</u>」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u>문화재보호법</u>」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 3. (생략)</p> <p>② 「<u>문화재보호법</u>」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신 설></p>	<p>-----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도서관법</u>」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p> <p>7. 「<u>과학관육성법</u>」 제6조에 따라-----</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p> <p>1.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와 「<u>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u>」에 따라 ----- 2.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47조제1항에 따라----- ----- -----.</p> <p>제9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u>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2007. 8. 1)</u></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p>